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법률 제 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에 대한 시행일을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00호, 19. 8.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의 시행일을 2024년 8월 20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안

제1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6